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등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92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등	3

I. 제안경위

2026년 4월 3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금체불 규모는 2024년 기준 2조원을 초과하였고, 최근 10여년간 누적 15조 6천억원에 달하는 등 구조적·상시적 문제로 고착되고 있음. 특히 건설업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전체 임금체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는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철도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방지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임금 직접지급 원칙의 특례를 도입하여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급 범위 내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의 하도급 구조

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3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영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80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¹⁾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자대금지급시스템’²⁾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수령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절차 및 감독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이 의결전제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안, 의안번호 제18088호) 제34조제9항은 시스템 의무이용 대상 및 이용 범위를 확대하며 이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 개정안은 염태영의원안을 의결전제로 함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음.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임금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는 같은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수령하는 공사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채무³⁾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⑥ 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근로자 명단 및 임금산정과 지급 등에 필요한 자

<신 설> <신 설>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임금 직접지급의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 지급 및 자료 제출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⁴⁾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관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을 위해 건설업의 공사도급⁵⁾에 관하여 사용자 외 제3자의 임금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따르면,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① 직상(直上) 수급인⁶⁾이 하수급인⁷⁾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3) (자구) 대금 채무 → 대금 지급 채무

4) (자구)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으로,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함.

6)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수급인의 바로 전 도급인을 말함.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 ② 확정된 지급명령 등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임금채권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③ 하수급인이 임금채무의 존재를 직상 수급인에게 고지하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지불 불능에 관한 명백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는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⁸⁾

또한, 건설공사에 관한 원수급인(발주자의 수급인,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첫 수급인을 말함)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원수급인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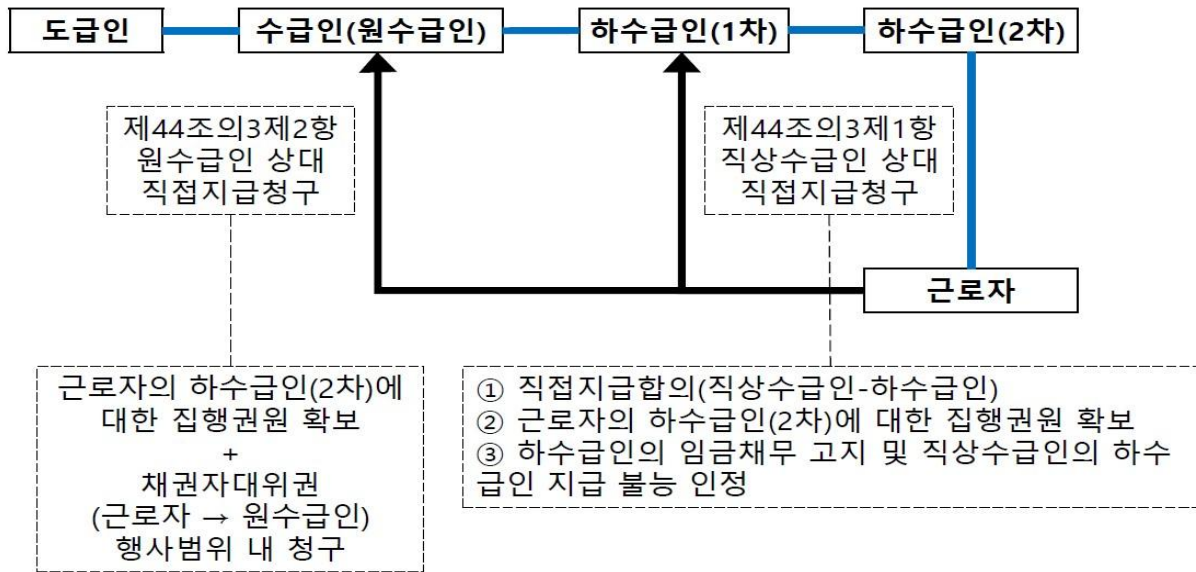
7)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수급인의 수급인을 말함.

8)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9)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직접 지급의 특례 >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¹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¹¹⁾에

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10)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 하도급 지킴이(조달청), 채불 e제로(철도공단), 상생결제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 흐름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의 경우 2023년¹²⁾ 총 건설업 임금 체불액이 4,36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에서의 임금체불액은 총 임금 체불액 대비 0.06%에 불과한 2억 6,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하도급대금 전자지급시스템 이용의 임금체불 방지에 효과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의무 이용 대상을 민간건설공사 분야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2023년 설·추석 명절 대비 체불액 점검 결과

(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8088호, 이하 ‘염태영의원안’)은 ①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이용 대상을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확대하고, ② 발주자,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수령하도록 의무화하며, ③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하수급인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체불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는 방식 등으로 하수급인등에게 청구내용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통합·조정한 국토교통위원회 대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제18862호]이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개정안은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 직접지급제’와 연계하여 「근로기준법」에 관련 사항을 신설하려는 취지임.

이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가 아니라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인 발주자가 하수급인등¹³⁾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발주자의 건설근로자에 대한 대금 지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

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제18862호」 제34조제9항은 ‘하수급인등’을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이라고 정의함.

지급의 원칙¹⁴⁾에 부합하는 적법한 임금 지급방법으로 인정되는지, 그 지급으로 인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등이 「건설산업기본법」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발주자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수령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 등을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발주자의 임금 직접지급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임금지급방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지급범위 내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것을 법률로써 명문화하여 발주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근로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또한 개정안과 같이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도입되면 건설업의 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 비용이 단계적으로 삭감되거나, 사업운영비로 유용되는 등의 구조적인 체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임금채권 보호에 실효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

14)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

다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대금 지급 과정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금 산정과 지급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이와 관련된 감독·시정명령 등 규정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바 심사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¹⁵⁾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하고, 이에 대한 약정계좌를 등록하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등록된 약정계좌에 직접 입금

1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⑦ 법 제34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구·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할 것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청구할 것

다. 나목에 따라 청구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정계좌(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전자조달시스템등에 등록할 것.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등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2.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할 것

나. 약정계좌(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등이 자동으로 생성한 계좌)에 직접 입금(법 제35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직접 입금)할 것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전자조달시스템등의 운영이 중단되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급대상자별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약정계좌가 아닌 지급대상자별 일반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이 복구되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를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전자조달시스템등에 입력해야 한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고려하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수령하는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별도로 근로자 명단 및 임금 산정과 지급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도 근로자 임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관련된 개정안의 자료 제출 요구 등 규정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참고로,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¹⁶⁾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고 있음.¹⁷⁾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개정안을 통해 발주자 직접지급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효과는 있으나,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서도 발주자의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의무는 부과되는 것이므로, 입법 효율성의 관점에서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을 두는 것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조문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의 문언 수정이 필요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조상 발주자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임금산정 등 절차를 상정하기 어려운바 발

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제18862호

17) 제98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4조제9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자

주자의 하수급인등에 대한 임금 자료 제출 요구 근거, 시정명령 등 행정대상을 전제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교육부는 발주자의 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에는 동의하나, 향후 대통령령 개정 시 적용 공사에 소규모 공사 제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¹⁸⁾

문 의 처
02)6788-5540

18) 경기도 교육청 등은 임금 직접지급 대상 공사의 범위 기준 설정이 필요하고, 발주자 책임 범위의 합리적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별도로 제출하였음.